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21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5년 12월 18일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

나. 제안이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하며, 기준이 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안 제5조)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 명시
- 불필요한 규제 사항 삭제(안 제7조제3호, 안 제10조제5호)
 - 기타의 경우 등으로 표현된 불필요한 규제 삭제
-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삭제(안 제12조)
 -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조례안은

-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하며, 기준이 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에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고,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애매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